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13, 10층)

[순 서]

사회: 최종연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 현장대응팀장)

1. 인사말 - 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장)
 2. 집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상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3. 경찰 대응 과정에서의 피해자 증언 - 박순향 민주연합노조틀게이트 지부장
 4. 법적 대응 방안 및 계획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
- 가. 집회금지통보 취소소송: 김차곤 변호사
- 나. 해산명령 및 이격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정병욱 변호사
- 다. 국가배상소송: 김병욱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사말

권영국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단장)

<들어가는 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6일과 17일 건설노조의 서울 세종대로 1박 2일 노숙집회를 기화로 집회시위에 공격과 탄압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무부장관, 집권여당,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불법집회 엄정대응’과 ‘집행 공권력에 대한 면책 보장’과 ‘특진’을 약속하며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각종 제도 개악과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엄정대응 말 한마디에 경찰은 정권의 사병인 것처럼 돌변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과 언론 통제에 자신감을 얻은 윤석열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공격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의 실패를 노조탄압과 언론 통제, 그리고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으로 무마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에게 명령하는 군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동조합의 집회를 불법이라고 말하자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박 2일 노숙농성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자 노숙농성은 곧바로 강제해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의 자유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법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법을 이용한 자의적인 지배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기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지배수단으로서 법을 동원하는 것에 법치라는 포장지를 씌웠습니다.

윤석열 그는 법을 ‘조직화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와 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워 먹었습니다.

법치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권력자를 다스린다는 법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법치란 권력을 가진 집단의 공권력 사용을 제어하여 피지배자들이 부당하고 자의적인 지배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이상으로서 인류의 지혜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황제, 왕, 통치자, 귀족, 양반 등과 같은 권력자의 권력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 이념의 기본요소입니다. 곧 법치는 권력집단과 국가기구의 견제를 겨냥한 개념입니다.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여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부담만 지우는,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법률과 관례를 동원해서 지배하는 것을 독일 법학자 라드부르흐는 ‘법률적 불법’, ‘불법적 법치’라고 일컬었습니다. 라드부르흐는 독일 나찌 정권의 법을 이용한 홀로코스트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법학자입니다.

윤석열과 이 정부는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법률적 불법과 기본권 탄압의 만행을 상시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대통령의 엄정대응 명령 이후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법률 대응을 할 것인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탄압과 경찰권 행사의 불법>

지난 5월 25일, 6월 9일 각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과 금속노조 등이 주최한 문화제 및 노숙농성이 진행되었고, 7월 7일에는 동일한 주최 단위에서 1박 2일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야간 시간에 제한통보를 받고 진행되었습니다.

위 세 차례의 문화제 또는 집회에서, 그리고 바로 이틀 전 7. 21,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노숙농성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나, 경찰은 불법적인 강제해산 및 이격조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을 경찰 기동대로 둘러싸서 고립시킨 후 사지를 들어올려 이동한 후, 집회 장소를 벗어난 곳에 던져놓는 것을 그들은 ‘이격조치’라고 부릅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후로 무수히 많은 불법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최근 집회 대응은 대단히 불법적이면서도 폭력적인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회라고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해산명령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산명령을 내리고 대단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판결을 거듭해서 선고한 대법원 바로 옆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세월호 청와대 기자회견을 경찰이 해산시킨 사건에서¹⁾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또는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즉시강제도 집행할 수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최근 집회·시위 대응 행태를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① 위법한 해산명령의 집행

2023. 5. 25. 제1차 노숙문화제, 2023. 6. 9. 제2차 노숙문화제, 2023. 7. 21. 불법파견 판결촉구 문화제 모두 대법원 동문 옆 인도 일부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이 노숙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제는 집회도 아닐 뿐더러, 노숙을 집회라고 보더라도 평화적 집회이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으므로 강제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형태의 노숙문화제에 대해 ‘정부 비판 구호를 외쳤다’,

1)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피켓/현수막을 설치했다’, 가장 최근 7. 21.에는 ‘정부 비판 삼행시를 낭송했다’는 이유까지 들어 집회로 판단한 후, 대법원 100m 내 집회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듭하여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노숙에 대해서도 조끼나 몸자보를 부착하고 피켓을 세워놓은 것을 이유로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명령을 내리고, 모두 실제로 해산시켰습니다.

② 해산의 방법으로서의 강제 이격조치

소위 경찰 스스로 ‘이격조치’이라는 것은, 경찰기동대원들이 집회·문화제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의 팔·다리·허리 등 신체를 붙잡고 들어내어 임의적인 장소에 데려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격조치’는 지난 5월 25일 1차 노숙문화제부터 강제해산의 수단으로서 지속·반복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고, 이전 정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형태의 경찰력 행사입니다.

‘이격조치’는 평화집회에 대한 위법한 해산방식일 뿐더러, 그 자체로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격조치 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고, 일정시간의 체포·구속의 효과를 가져오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격거리 및 시간이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찰과상·염좌와 부종·멍 등 상해가 발생하였고, 옷이 벗겨지거나 속옷이 보여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③ 도로교통법의 위법한 해석 및 경고

경찰은 노숙문화제 도중 또는 이격조치 이후, 집회종료 이후 모여있는 참석자들에 대해 거듭하여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이라며 현행법체포를 위협하거나 귀가를 종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8조 제3항 제2호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이므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 및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통행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인도의 일부에 앉아있는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위 도로교통법 조항을 자의적

으로 해석하여 그 위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위법한 해석 및 귀가 중용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후략)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이격조치 시에 집회/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그 현장에 있는 인권침해감시단·변호사·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를 근거로 이격조치를 집행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노숙문화제 또는 집회에 관해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상 이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를 범죄행위로 보더라도 당시 1~3차 노숙문화제/집회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인정될 요인이 전혀 없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하여 범죄의 제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3차 노숙문화제/집회가 제자리에 앉아서 노숙하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유지되는 이상 집회 자체만으로 변호사·인권단체 활동가·기자 등 그 장소에 단순히 머물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이나 ‘**그 밖의 위험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집회 참가자나 제3자가 위해를 입을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억류 또는 피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난시키는 조치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까지 수행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⑤ 위법한 통행 제한 조치

경찰은 5. 25. 제1차 노숙문화제 당시 반포대로 하행 방향 전 차선의 통행을 차단하고 강제해산 작전에 돌입하였고, 7. 21. 불법과건 판결촉구 공동투쟁 강제해산시에도 인도에 인접한 하위 1개 차로를 봉쇄하여 이동로를 확보한 뒤 강제해산을 집행했습니다.

7. 7. 제3차 집회 강제해산 직후에는 이격조치를 당한 집회 참가자 및 인권침해감시단·변호사들이 다시 집회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면도로와 인도 노상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하고 선별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노숙문화제/집회 전후로 이동형 펜스를 인도 노상에 설치하면서 보행자 통행을 제약하는 한편 시각장애이용 점자블록 위에 또는 가로질러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점자블록 사용을 불가능케 하였습니다(6. 9. 제2차 문화제).

⑥ 경찰 채증 규칙 위반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제8조 후단), 채증시에는 ‘사전에 채증 대상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채증요원의 소속, 채증 개시사실을 직접 고지하거나 방송 등으로 알려야’ 하고(제9조 제1항), 채증시에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 승인 하에 개인 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제2항).

그런데 최근 1차부터 3차까지의 노숙문화제/집회에서 경찰은 채증사실 고지 없이 또는 평화로운 집회상태에 대해 개별적으로 채증을 시작한 후 항의를 받고 나서야 중단하거나, 교통경찰·정보관 등이 개인 휴대전화로 채증을 감행하고, 특히 7. 21. 불법과건 판결촉구 공동행동에서는 참가자별로 이격조치 시작 및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채증하는 방식으로 채증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정보활동시에도 정보 수집 사전에 신분을 밝히고 정보수집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데,²⁾ 경찰 정보관들은 신분을 밝히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⑦ 집회·시위 장소에 경찰관의 위법한 출입 및 방해

집시법 제19조 제1항은 경찰관이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정복(正服)을 입고 집회·시위의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차부터 3차까지의 노숙문화제/집회에서 경찰은 사복을 착용한 정보관들이 집회 대열에 들어와서 정보수집을 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하였고, 7. 15. 범국민대회에서는 차량 통행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이동형 펜스를 설치하고 기동대원을 배치하여 집회 대열을 동서로 갈라놓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집시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회의 대열이 분리되고 참가자들이 위축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또한 2023. 7. 15.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 시위 행진 당시 18시경 안국동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일본대서관 방면으로 접근하는 시위 행렬을 ‘2천명까지만 진입 가능하다’고 제한통보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기동대가 펜스로 가로막은 후, 안국동사거리와 종각사거리 사이 조계사로에 갇힌 시위 행렬에 대해 해산을 요구하며 인도로 밀어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위 방해 역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⑧ 경찰관 소속·신분 등 공개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므로, 과도한 법집행을 방지하고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줘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2022. 12. 1. 22진정

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① 경찰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0420400).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제16조에 의거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동일한 이유로 성명 공개를 거부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했고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하였습니다(2021. 6. 21. 제2021-5소위32-경03호).

또한 경찰복제에관한규칙(행안부령 제298호)은 근무장(제15조) 및 기동장(제16조)의 일부로서 이름표를 포함시켜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차부터 3차까지의 노숙문화제/집회 과정에서 경찰은 관동 성명을 말하라는 변호사·감시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공통), “정보공개청구하세요” 라고 답변하여(1차)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나아가 이름표를 조끼로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채 집회 현장에 배치되는 등(7. 21.) 경찰복제규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⑨ 방송조명차의 위법·인권침해적 운용

경찰은 지난 6. 9. 2차 노숙문화제 및 7. 21. 불법파견 판결촉구 공동투쟁 당시 각각 이격조치를 실시한 이후 참가자들이 집단으로 이격된 장소(사랑의교회 앞 공터)에서 경찰 방송조명차 2대를 동원하여 강한 조명을 비추는 방법으로 참가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부과하였고, 7. 7. 3차 집회 제한통보된 시간대에도 방송조명차를 운용했습니다.

방송조명차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또는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사용 기준 및 주의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격조치가 종료되어 단순히 인도에 모여있는 참가자들에게 매우 높은 조도의 조명을 장시간 비추는 것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침해하고 경직법상 일반적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최근 1차부터 3차까지, 그리고 7. 15. 범국민대회와 7. 21.자 최근 노숙문화제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의 위법성이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거듭하여 지적되는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절 대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협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현장 인권 침해를 감시해온 명숙 활동가와 박순향 지부장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변호단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월 7일 비정규직 1박2일 집회
인권침해보고서 보고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침해감시단

7.7 비정규직 집회의 인권침해 특징

1. 야간노숙집회에 대한 탄압: 제한 통보와 기자회견 중 강제해산
2. 강제해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해산
 - 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해산
 - 다. 변호사를 비롯한 감시단에 대한 물리적 사용-
3. 물리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폭력적 이격 조치)
 - 가. 부상
 - 나.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이격 방식
 - 다. 언어폭력으로 인한 모욕과 인격권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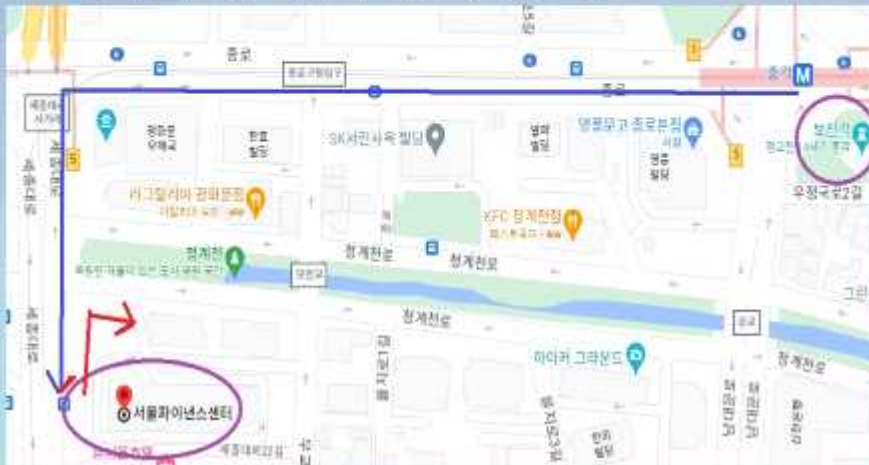


7.7 비정규직 집회의 인권침해 특징

4. 자의적인 물품압수 등 위법적인 즉시강제
5. 집회 방해 (소음을 핑계로 불필요한 경고방송 등)
6. 공적 업무에 맞지 않는 경찰력 집행과 경찰의 태도
 - 가. 불필요한 마찰을 유도하는 발언
 - 나. 경찰의 개인적 폭력 행사
 - 다. 신분을 숨기는 공무집행(관등성명, 명찰 떼기, 마스크 착용)
 - 라. 불법 체증



7.7 비정규직 집회의 인권침해 시간대별 경과



1. 야간노숙집회에 대한 탄압: 제한 통보와 기자회견 중 강제해산



가.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집회 제한통보

“질서유지인의 통제를 벗어난 음주, 소란, 노상방뇨 행위나 안전사고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인근 회사원이나 상업시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 공공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줄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는 야간노숙집회로 발생할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술 먹으면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야간노숙집회를 금지할 사유가 아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1박2일 농성을 하기도 했음에도 어떠한 충돌이나 안전사고가 없었음에도 집회제한 통보를 한 것은 기준과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 밤 11시까지는 위 사유로 안 된다면 밤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금지. 사람이 거의 없는 거리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전국에서 모인 집회참가자들이 잠을 각자 자고 아침 7시에 오르는 식의 집회 제한통보 .

나. 물리력을 동원한야간집회 해산

1. 야간노숙집회에 대한 탄압: 제한 통보와 기자회견 중 강제해산



가.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집회 제한통보

나. 물리력을 동원한야간집회 해산

야간노숙집회를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 설령 경찰의 주장대로 불법적인 집회 라면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지 강제적인 해산을 할 일이 아님.

지난 2011년, 2012년, 2021년에 대법원이 해산명령에 대한 판결과도 배치. 대법원은 2011년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1. 야간노숙집회에 대한 탄압: 제한 통보와 기자회견 중 강제해산



△ 2011년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1. 야간노숙집회에 대한 탄압: 제한 통보와 기자회견 중 강제해산



▲ 유엔 평화적 집회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의견서(유엔인권이사회 201624)

23. 정부당국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력 집회가 불법(unlawful)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를 집회를 해산시키는 근거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치 대표들에 대하여 벌금/과태료, 구금 등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유엔보고서 A/HRC/20/27, 29 항 참조). 이는 사전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특정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는 **발발집회(spontaneous assemblies)**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발발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요건이 면제되어야 하며, 발발집회당국은 이러한 발발집회를 여타의 다른 집회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호하고 조정해야 한다.

▲ 유엔 자유권 헌장은 제37조: 제21조(평화적 집회의 권리)(2020)

27. 평화적 집회가 일부 일한 대공으로부터 부정적 또는 심지어 폭력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해당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모든 참여자를 보호하고 그러한 집회가 광범한 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대공에게 부정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 신고 의무가 부과된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회 참여 행위가 위법인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집회 해산 또는 참여자나 주최자 체포의 근거로 삼거나, 혹은 이들을 행사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기소하는 등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신고 미이행은 이유로 주최자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 당국에 소명의 책임이 있다. 집회의 미신고가 발생 내에서 집회를 용이하게 하고 참여자를 보호해야 하는 당국의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는다.

2. 강제해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해산

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해산

다. 변호사를 비롯한 감시단에 대한 물리력 사용



2. 강제해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해산

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해산

다. 변호사를 비롯한 감시단에 대한 물리력 사용



2. 강제해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해산
- 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해산
- 다. 변호사를 비롯한 감시단에 대한 물리적 행사



3. 물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폭력적 이격 조치)



- 가. 부상
- 나. 성격불쾌감을 유발하는 이격 방식
- 다. 언어폭력으로 인한 모욕과 인격권 침해



3. 물리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폭력적 이격 조치)



가. 부상

나.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이격 방식

다. 언어폭력으로 인한 모욕과 인격권 침해



3. 물리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폭력적 이격 조치)



가. 부상

나.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이격 방식

다. 언어폭력으로 인한 모욕과 인격권 침해

- 바지 뒷춤(벨트 부분)을 잡거나, 이곳에 손을 끼우는 행위를 빈번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집회참여자도 중요 신체 부위가 압박되고, 드러나거나, 바지가 찢어지거나(2차), 속옷이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성적불쾌감을 호소
- 사지를 드는 방식으로 이격을 거부하는 집회참여자도 제압하여 들고나가며 가랑이 사이로 손을 감아 엉덩이를 잡기도 함
- 많은 경찰이 동일한 이격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육을 했을 가능성이 높음. 만약 경찰의 지침과 훈련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더욱 큰 문제임

3. 물리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폭력적 이격 조치)



가. 부상

나.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이격 방식

다. 언어폭력으로 인한 모욕과 인격권 침해

- 경찰이 실신한 연행자를 보며 비웃음
- 사과를 요구하자 '원래 웃는 상이에요'라며 도발

▲ 유엔 자유권 일반논평 37호: 제21조(평화적 집회의 권리)(2020)

80. 관련 인권 기준을 포함해, 집회의 치안과 관련된 훈련을 받은 법집행공무원만이 해당 목적을 위해 배치되어야 한다. 여성, 아동,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적절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집행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물리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폭력적 이격 조치)



▲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

제1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시행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967호, 2020. 6. 10. 제정]

제2조(직권남용 금지)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직권남용에 따라 공경하고 직권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란을 남용하거나 그 직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례 원칙) 경찰관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부터 인권의 침해가 경찰관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적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취침 방해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끼치거나 재산에 공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하여야 하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진정의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자의적인 물품압수 등 위법적인 즉시강제



- 경찰은 영장이 없이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 집회물품 일시보관이라고 함. 그러나 집회주최측의 물품을 협의한 것은 아님.
-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
- 텐트와 무대현수막, 음향장비가 위험한 물품이 아님
- 또한 저녁 식사조차 반입을 못하게 막았으나 향의로 음식이 들어옴

4. 자의적인 물품압수 등 위법적인 즉시강제



4. 자의적인 물품압수 등 위법적인 즉시강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1인용 텐트, 음향장비, 무대현수막은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아님.

5. 집회 방해 (소음을 핑계로 불필요한 경고방송 등)



5. 집회 방해 (소음을 핑계로 불필요한 경고방송 등)



- 집회를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된 21시 43분경 경찰은 집회 음량이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며 불법이므로 채증을 하겠다고 방송하여 집회를 방해.. "야간 집회 소음 65 데시벨 기준치 이내로 소음을 유지해달라"며 "방송을 했다. 그러나 경찰의 경고 방송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위치에서 소음을 측정했다고 볼 수 없음
- 22시 15분경에는 소음 기준치를 언급하며 음향장비 "일시보관" 할 수 있다며, 방해·거부할 경우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는 경고 방송을 약 2분 40초 동안 함
- 23시 03분경 음향장비를 무리하게 탈취.

6. 공적 업무에 맞지 않는 경찰력 집행과 경찰의 태도



가. 불필요한 마찰을 유도하는 발언

'우리도 듣기 싫다'고 얼굴에 대고 욕박을 지르고, 안전조치 요구하는 침해 감시단에게 '너 시끄러워'라며 반말로 소리지름

나. 경찰의 개인적 폭력 행사

밀리는 상황이 되자 경찰은 참가자에게 "너 나 밀었어?", "연행하겠다"며 목을 감싸며 헤드락을 걸어 경찰 대오 안으로 던지듯이 밀어 크게 부상

다. 신분을 숨기는 공무집행(관등성명, 명찰떼기, 마스크 착용)

라. 불법채증

6. 공적 업무에 맞지 않는 경찰력 집행과 경찰의 태도



6. 공적 업무에 맞지 않는 경찰력 집행과 경찰의 태도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23.2.13.)

: 경찰관의 신분제시 의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불심검문 조항에만 있으나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다른 경우에도 경찰은 신분제시 요구에는 응해야 함.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유엔 자유권 일반논평 37호: 제21조(평화적 집회의 권리)(2020)

92. 상황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회에 사복 경찰을 배치해야 하며, 그러한 경찰이 폭력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검문, 체포,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사복 경찰은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불가양의 권리를 가진다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사회,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범주의 이슈에 관하여 견해를 표현하는 정당한 수단이라는 점, 또한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축소가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정부당국의 의무라는 점을 법률과 관행 모두에서 인정할 것.

- 2016년 유엔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고맙습니다!



<행정소송의 개요>

1. 소송명칭 :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2. 당사자

원고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피고 : 서울지방경찰청장

3. 취소의 대상(금지통보의 내용)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이자 주요도로에서 개최되는 집회로 주요도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5조, 제12조에 따라 2023. 7. 7. 23:00~같은 달 8. 07:00까지 집회를 금지하였다.

※ 경찰(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집시법 제12조 이외에도 제5조를 집회금지통보의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퇴진정국에서는 경찰이 제12조를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통보를 하였던 것과 차이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2023. 5. 24. 당정협의를 열고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제한하겠다’ 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집시법 제5조³⁾ 자의적인 확대적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4. 금지처분의 위헌·위법성

3)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결정] 집시법 제5조 및 법 제12조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2023. 7. 7.~같은 달 8.에 예정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꺾이지 않는 마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1박2일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 제5조 1항(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있는 점, 참가예정인원이 300명 정도로서 비교적 적은 점, 7. 7. 23~7. 8. 07:00까지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점,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제한이나 금지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점, 야간옥외집회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25)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간대에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다고 하여 집시법 제12조 제2항 단서(주요도시의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2023. 7. 7. 23:00~같은 달 8. 07:00까지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이전까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야간촛불집회, 야간촛불문화제, 노숙집회 등을 앞으로는 금지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조치이다. 반헌법적, 반법률적 기본권침해를 막는 것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개요>

1. 소송명칭: 집회참가자에 대한 이격조치 등 위헌확인

2. 당사자

청구인 : 2023. 7. 7~ 8, 집회 참여자

피청구인 :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3.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들이 수립한 야간집회에 대한 대응지침 또는 지시, 청구인들에 대한 해산명령과 이격조치

4. 심판청구의 적법성

- 심판대상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⁴⁾⁵⁾⁶⁾
- 심판대상 중 해산명령과 이격조치는 이미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지만, 현장에서 적법하다는 인식 아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단순히 개별행위의 위법 여부 문제를 떠나 기본권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

5. 심판대상에 의한 기본권 침해

○ 법률유보원칙 위반

-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요건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평화적 집회에 대해 해산을 강요하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4) 행정상의 사실행위 중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마87 결정 등 참조).

5) 행정청의 지시를 공권력행사로 인정한 사례로는 국제그룹 해산사건(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7헌마416 결정) 등 참조.

6) 경찰의 사실행위를 공권력행사로 인정한 사례로는 서울광장 차벽 봉쇄 사건(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사건(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결정), 직사살수행위 사건(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5헌마1149 결정) 등 참조.

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임.

- 즉 심판대상은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제약한 공권력행사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함

○ 과잉금지원칙 위배

- 야간집회를 해산하겠다는 심판대상의 목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목적에 전면적으로 위배되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 법률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기본권을 제한한 심판대상의 방법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례 및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점, 물리력을 수반한 사실행위로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점,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 하므로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직접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는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점, 평화로운 집회를 허용할 수 있음에도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에서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음
- 심판대상에 의해 야간집회가 해산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은 전면적으로 박탈되며, 나아가 심판대상에 의한 야간 집회의 전면적 제한은 시민의 의사를 위축시키는 등 공익을 해함.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도 못했음
- 따라서 심판대상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함

○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 심판대상 중 이격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체포에 준하는 조치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어야함.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

※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해산하는 지침, 해산명령, 이격조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례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경찰청장 등이 수립한 지침과 이 사건 집회에서 이

루어진 경찰의 현장조치가 반헌법적 공권력행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현장에서 경찰의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소송 개요>

* 집회참가자가 원고인 사건과 인권침해감시단(변호인+인권활동가)이 원고인 사건으로 나누어 진행

1. 집회참가자 사건

가. 당사자 관계

원고 : 집회 참가자(부상자 포함) 74명

피고 : 대한민국, 임동균 총경(남대문경찰서장), 임영재 경정(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이수진, 안재철, 기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기동대원

나. 피고의 불법행위

1) 해산명령의 위법성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하여 당일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집회를 제한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고지함. 이러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는 수십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인도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라고 평가할 수 없음(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물품 탈취행위의 위법성

일시적, 단기적 집회의 경우 이를 위해 집회 진행에 필요한 물건을 도로에 설치하여 집회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도로법 등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 도로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3노

4012 판결⁷⁾). 따라서 도로관리청 및 경찰은 일시적, 단기적 집회에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 도로법을 근거로 설치를 제지하거나 철거할 수 없고, 설치된 물건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위험을 제거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의 조치(물건 적치 위치를 조정하여 통행로 등을 확보)만을 할 수 있음(도로법 제74조). 따라서 이 사건 소형텐트 탈취는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3) 이격조치의 위법성

서울남대문 경찰서장의 경비과장은 경직법 제5, 6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집회참가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장소를 이전시키는 ‘이격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집회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격조치(바지춤을 움켜잡은 행위, 남경이 여성 집회참가자 이동시킨 행위, 각종 폭행과 폭언 포함)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경직법 제5조 요건 충족하지 못함).

또한 이 사건 집회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경직법 제6조 요건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경찰의 이격조치는 경직법 제5조, 제6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위법성이 매우 큼.

4) 이격조치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폭행

위와 같은 이격조치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폭행이 이루어져 상해에 이른

7)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873 판결로 확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불법행위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현재 폭행, 상해 여부를 취합 중임

다. 침해된 권리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라. 손해배상의 범위

1인당 100만 원

2. 인권침해감시단(변호인+인권활동가) 사건

가. 당사자

원고 : 변호단 변호사 10명+ 인권침해 감시단 3명

피고 : 대한민국, 임동균 총경(남대문경찰서장), 임영재 경정(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김지나, 모욕행위를 한 경찰관(67기동대장으로 추정)

나. 불법행위

1) 이격조치의 위법성

‘1.나. 3)’ 과 동일

2) 이격조치 중 변호인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 욕설

피고는 집회참가자를 이격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감시단이 항의하자, ‘양아치’ 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음. 또한, 변호인이 이격조치에 저항하자 팔을 비틀거나 너무 심하게 잡아 당혀 상해에 이르게 함.

3) 접견교통권 침해의 위법성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주지방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고단651, 2012고단1248, 2012고단1163 판결에 비취보면 ‘경찰관들이 집회참가자 등을 강제로 들어 옮기거나 방패 등으로 밀어 갓길 쪽으로 이동시킨 행위는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 침해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체포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변호사가 이격(체포)되는 집회참가자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방해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이 부분은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불법행위로 특정할지 결정할 예정임.

다. 침해된 권리

신체의 자유, 인격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라. 손해배상 범위

1인당 100만 원